

6월 분기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

상법 제 354 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45 조 2 에 의거하여 2019 년 6 월 30 일 24 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 년 7 월 1 일부터 2019 년 7 월 7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9 년 6 월 12 일

주식회사 대교
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3 길 23
대표이사 박수완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